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2483
-------------	-------

발의연월일 : 2018. 3. 15.

발의자 : 강훈식 · 김종회 · 정춘숙
 기동민 · 안호영 · 김철민
 이원욱 · 윤후덕 · 임종성
 최인호 · 민홍철 · 신창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승센터는 분산 배치된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을 가능하게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로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어 환승센터가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대상을 상업시설 등과 결합한 민간개발 위주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환승센터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채 조성되고 있고 그 결과 체계적인 환승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요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06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환승센터의”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 센터등”이라 한다)의”로,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환승센터”를 각각 “환승센터등”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9호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등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등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u>복합환승센터</u> 개발 기본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복합환승센터의</u>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u>복합환승센터</u>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복합환승센터</u> 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율적인 <u>복합환승센터</u>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2. (생략) 3. <u>복합환승센터의</u> 기본 개발 방안 4. <u>복합환승센터의</u>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u>복합환승센터</u>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u>복합환승센터</u>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44조(<u>환승센터</u> 등 개발 기본계획) ① ----- <u>환승센터</u> 및 <u>복합환승센터</u>(이하 “<u>환승센터등</u>”이라 한다)의 ----- <u>환승센터등</u>----- -----.</p> <p>② ----- <u>환승센터등</u>----- -----.</p> <p>1. ----- <u>환승센터등</u>----- -----</p> <p>2. (현행과 같음)</p> <p>3. <u>환승센터등</u>----- -----</p> <p>4. <u>환승센터등</u>----- -----</p> <p>5. ----- <u>환승센터등</u>----- -----</p> <p>③ ----- <u>환승센터등</u>----- -----</p>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4조제1항에 따른 <u>복합환승센터</u>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 <u>환승센터등</u> ----- -----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